2014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

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줄 전문 마케팅·컨설팅 회사를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10월 14일

중소기업청장

Ⅰ. 해외민간네트워크 개요

○ 중소기업청(중소기업진흥공단)에서 해외 현지의 역량있는 **민간 마케팅·컨설팅 회사를 "해외민간네트워크"로 지정***하여 **중소기업의 제품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**

* 2013년 50개국 135개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·운영 중

<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시 참여가능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>

◇ **(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)**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간 매칭을 통해, 중소기업의 제품수출 및 현지진출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민간 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

⇨ 국가별 1.7~2천만원 한도, 중소기업 수출역량별 50~70%지원

◇ **(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)**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로 시장조사·홍보용디자인개발·온라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

⇨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조사 등의 서비스 제공

◇ **(무역촉진단 파견 사업)** 중소기업간 공동 해외전시회 참가·시장개척단 파견·수출컨소시엄 구성·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

⇨ 주관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전시회 구성·바이어 섭외·상담회 주선 등의 서비스 제공

※ 이외,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프로그램의 수행사로 활동

2.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

1. 모집 분야

분야	내 용
수출 지원	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, 바이어발굴, 현지 마케팅 세일즈활동, 홍보대행, 수출계약지원, 대금회수 등
현지투자	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, 파트너 발굴,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
기술제휴	기술제휴(기술이전, 협력, 라이센싱 등)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
투자유치	해외 벤처캐피탈 연계, 현지투자 상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
조달진출	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,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 알선, 입찰 대행 업무 수행
대형유통망 진출	대형유통망에 직접 납품이 가능하거나 세일즈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, 대형할인점,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
품목별·시장별 공동진출	다수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유사제품 간 또는 특정타깃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(중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활동 지원)

2. 신청 자격

소재지	자격요건
국내소재 기업	· 2년 이상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, 해외 현지법인(지사) 운영 · 연매출('12) 1억원 이상 · 해외법인(지사)이 없는 경우, 현지 업무제휴 파트너 기업 (기관)과 2년 이상 협력하고, 협력체계 및 실적이 우수한 기업
해외소재 기업	· 1년 이상 현지에서 동 사업 관련 업무 수행, 기업의 수출 및 현지진출 활동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· 한국 내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대

○ 신청 제외 대상

-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 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 기간 : 2013. 11. 1(금)까지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되, 온라인 홈페이지 활용이 어려운 일부 해외소재 기업의 경우 우편접수 허용

- 온라인 :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

> ※ 홈페이지 회원 가입(기업회원으로 가입)→수출지원사업→
>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→해외민간네트워크→사업참여신청

- 신청접수 관련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(☏ 02-769-6716)

○ 문의처

- 신청 및 접수관련 :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
(☏ 02-769-6856/ 6705/ 6842)

- 사업제도 관련 :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(☏ 042-481-4473)

> ※ 지원사업 관련 상세처리절차, 참고자료, 접수·문의처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[수출지원사업-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-사업안내]를 참조

4.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절차 및 기준

□ **(평가 일정)** 모집공고 (10월) → 신청 및 접수 (10~11월초)
→ 서류 및 현장평가 (11월~12월) → 선정심의 ('13년 1월)

□ **(평가 방법)**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, 지원기반 등을 점검

구 분	내 용
1차 심사 (서류 심사)	- 지원 자격, 필수 제출서류 구비, 금융불량 여부 등 서류 심사
2차 심사 (실태 조사)	- 국내 소재기업 : 중진공 및 지역수출센터 중심으로 실태조사 - 해외 소재기업 : 중기청·중진공 담당자 등
3차 심사 (심의위원회)	- 민간전문가 및 중기청·중진공 임원급으로 심의 실시

□ **(평가 기준)**

'14년 평가항목	점 수
경영관리 능력	30
컨설팅 지원기반	25
컨설팅 제공능력	35
참여계획 기대효과	10
합계	**100**
가점(신규국가 여부)	**3**
감점(비도덕적 업무영위)	**최대-10**

붙임 : 2013년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신청서(양식)